

경 조 비 지 급 세 칩

2007년 1월 29일 제정 2009년 9월 9일 개정 2011년 12월 23일 개정 2012년 8월 24일 개정
2015년 4월 29일 개정 2019년 3월 13일 개정

현행안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1조 (명칭) 본 세칙은 현대위아지회(이하“지회”) 경조비 지급 세칙 으로 제정한다. 제2조 (적용대상 및 경조금) 1. 경조금 재원은 매월 조합원 1인당 1,000원씩 거출하여 지급한다. 2. 다음 경조사에 대하여 지급한다. <table><tr><th colspan="2">구분</th><th>경조금 (단위 : 만원)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결혼</td><td>본인 결혼</td><td>5</td></tr><tr><td>자녀 결혼</td><td>3</td></tr><tr><td>수연</td><td>본인 및 배우자 부모수연</td><td>3</td></tr><tr><td rowspan="5">사망</td><td>배우자 사망</td><td>10</td></tr><tr><td>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</td><td>5</td></tr><tr><td>자녀사망</td><td>10</td></tr><tr><td>조부모 사망</td><td>3</td></tr><tr><td>형제자매 사망</td><td>3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기타</td><td>상병위로금(3개월 이상)</td><td>5</td></tr><tr><td>정년퇴직</td><td>10</td></tr></table> 3. 조합원 사망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1인당 3만원을 급여공제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. 제3조 (조화지급) 본인, 부모, 배우자 사망 시 지회장 명의로 3단조화를 지급한다. 제4조 (경조금 신청) 경조금 신청은 경조사항 발생한 이후 지회 경조금 신청서와 경조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. (경조양식 제1호) 제5조 (시행) 본 세칙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6조 (통상관례) 본 세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.	구분		경조금 (단위 : 만원)	결혼	본인 결혼	5	자녀 결혼	3	수연	본인 및 배우자 부모수연	3	사망	배우자 사망	10	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	5	자녀사망	10	조부모 사망	3	형제자매 사망	3	기타	상병위로금(3개월 이상)	5	정년퇴직	10	제5조 (시행) 본 세칙은 <u>통과된</u>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6조 (제정과 개정) <u>본 세칙의 제정과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.</u> 제7조 (통상관례) 본 세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<u>따른다.</u>
구분		경조금 (단위 : 만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
결혼	본인 결혼	5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녀 결혼	3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연	본인 및 배우자 부모수연	3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망	배우자 사망	10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	5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녀사망	10																										
	조부모 사망	3																										
	형제자매 사망	3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	상병위로금(3개월 이상)	5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정년퇴직	10																										